

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



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4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」(2025. 4. 2. 제정)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, 재단 정관의 잉여금 처리 관련 조항과 상이한 사항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함.
- 나. 「행정안전부,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」에 따라 세입·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, 이사회 의결 절차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- 다. 「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」 제37조에 따라 정관 개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잉여금 처리 규정 개정 (안 제28조)
 - (1)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규정 반영
 - (2) 잉여금 기본재산에 편입 시 이사회 의결 절차 명확화

3.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: 붙임

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(안)

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 중 “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”를 “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”로, “사용한다.”를 “사용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재원은 같은 조례에 따라 반납 처리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8조(잉여금의 처리)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<u>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</u>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목적사업에 <u>사용한다.</u> <단서 신설></p>	<p>제28조(잉여금의 처리) ----- ----- ----- <u>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-----</u> --- <u>사용할 수 있다.</u> 다만, 「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재원은 같은 조례에 따라 반납 처리한다.</p>

관계법령

□ 「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」

제8조(반납 처리 등)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.

②~③ 생략

□ 행정안전부, 「2026년도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」

II. 예산편성의 원칙

⑥ 잉여금의 처리

- (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)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(자본금)에 편입하거나 또는 차입금변제에 우선 활용
- (재무회계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)
 - (출연기관)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이월 결손금을 보전한 후,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

□ 「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1~7. 생략

8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
9~10. 생략

② 정관의 제·개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□ 「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」

제37조(정관의 변경)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, 이사회
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과 시 의
회의 동의를 얻어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소 관 부 서		문화예술과
입 안 자	과 장	박 향 목
	팀 장	정 봉 석
	담 당 자	김 명 동 (480-6602)